

전자무역시대 농산물 수출물류 활성화 방안 및 과제

A Scheme of the Agriculture Export Logistics Improvement in E-Trade Era

박현희(Hyun-Hee Park)

한성대학교 시간강사(경영학 박사)

목 차

- | | |
|-----------------------------|----------------------------|
| I. 서론 | IV. 농산물 수출물류활동 활성화 방안 및 과제 |
| II. 농산물 수출물류지원 동향과 체계 | V. 요약 및 결론 |
| III. 농산물 수출지원과 물류아웃소싱의 상호연계 | 참고문헌 |
| | Abstract |

Abstract

The DDA negotiations, in 9th multilateral trade round, has focused on nine sectors including agriculture,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and service. After August 2004, member countries have intensified negotiations in order to reduce gaps between countries perspective. So most attention of members countries has been focused on agricultural trade and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Agricultural negotiation confront tough challenges because of different positions among members countries, and are not expected to reach perfect forms of modalities. Nevertheless based on the fact that many countries nearly reached agreement on some core.

Under this circumstance, Korea has to prepare more practical strategics and more effective individual commitments to minimized the agricultural market opening. The other way, some Korean agricultural products will be exported by the DDA negotiation.

Recently the understanding of Third-Party Logistics and Logistics Outsourcing are receiving increased attention as means of becoming competitive in agricultural products export improvement. So this paper presents a in-depth analysis for third-party logistics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agricultural product export system improvement in E-trade Era.

Key Words : WTO/DDA Negotiations, Agricultural Product Export, Third-Party Logistics, Logistics Outsourcing, E-Trade Era

I. 서론

농업이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산업이며 2012년까지 농산물수출 100억 달러 달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산물 수출의 활성화는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농업분야는 UR 협정 체결 당시 농업분야에 대한 시장개방을 가속화 한다는 목표 아래 농산물 무역 자유화를 위한 협상이 진행되었고 WTO 출범과 더불어 농산물 분야도 다자무역체제에 편입되게 되었다.

농업분야에 대한 협상은 1995년 제1차 싱가포르 각료회의 이후 처음 시작되어 계속 논의되어 오다가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각료회의를 계기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WTO/DDA 농업협상은 UR 협상에서 기설정제(BIA)중의 하나로서 2000년 1월1일부터 실질적인 협상이 시작된 것이다.

WTO/DDA 농업협상에서는 관세와 같은 보호장벽과 농업분야에 대한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 수출보조의 단계적 철폐를 위한 방안이 주로 논의되어지고 있고 미국 등이 중심이 되어 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개도국을 차별화하는 개도국지위 분류의 움직임이 있는 한편 우리나라가 UR 협정에서 인정받았던 농산물 분야의 개도국지위에 대하여도 비판적인 시각이 팽배해 있는 것도 현실이다.

만약 우리가 이번 협상에서 개도국지위를 유지하게 되면 WTO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출보조의 지속적인 지원이 일정기간까지 가능하나 개도국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수출보조금으로 지원받는 수출물류비 등 각종의 지원이 향후 협상에서 결정되는 특정연도에는 완전폐지를 목표로 감축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UR 농업협상이후 농산물 수출시장의 개척과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수출 증대를 위하여 상대적으로 물류비 부담이 큰 일부의 분야에 대하여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WTO/DDA 협상이 합의되면 수출물류비의 지속적인 지원이 불가능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농산물수출 100억 달러 달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출시장 개척과 농산물 수출품목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수출물류 체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농산물은 다른 수출 재화와는 달리 신선도 유지를 비롯하여 운송, 보관, 포장 등에서 전문성이 요구되어지는 분야로 전문화된 농산물 수출물류 지원 서비스가 요구되어 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WTO/DDA 농업협상의 추진경과와 농업협정상 농업보조금에 대하여 알아보고, 농업부문에 지원되고 있는 수출물류비 지원 동향과 농산물 부문의 수출물류비 지원의 효과를 분석한 후 농산물 수출에서 물류아웃소싱을 상호 연계할 수 있는 방안과 농산물 수출물류 활동의 활성화 방안 및 과제에 대하여 연구해보고자 한다.

II. 농산물 수출물류지원 동향과 체계

1. WTO/DDA 농업협정과 농산물 수출지원체계

1) WTO/DDA 농업협상의 추진경과

WTO/DDA 협상에서 농업분야의 협상은 UR 협상 결과의 토대위에서 시장개방을 더욱 가속화 한다는 목표아래 다자협상의 틀로 편입되게 되었고, UR 협상 결과에 의해 각국은 관세와 보조금을 매년 감축하고 있다. UR 협정 체결당시 2000년부터는 추가적인 농산물 무역자유화를 위한 재협상에 합의 하였고(BIA; Built in Agenda, 기설정외제), 이에 따라 2000년 1월부터 농업협상이 시작되어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다자간무역협상(DDA; 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개발아젠다)이 출범 하였고, 농업협상은 DDA 협상의 일환으로서 농업협상의 기본방향과 일정이 확정되게 되었다.

농업협상은 UR 협상 당시 농산물 무역의 자유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UR 협상에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도하각료회의가 개최되기 이전인 2000년부터 시작되었고, 2001년 도하각료선언문에 DDA 협상의 의제로 편입되어 2002년부터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협상은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에서 진행되었다.

농업협상의 기본방향은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무역체제의 수립이라는 농업협상의 장기목표를 재확인하고,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과 수출보조의 점진적 폐지를 목표로 하는 감축과 무역왜곡적인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회원국들과의 농업협상 과정에서 비교역적 관심사항(NTC; Non-Trade Concerns)을 고려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조치 조항들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DDA 농업협상 일정은 2003년 3월까지 관세 및 보조금 등에 대한 세부원칙(Modality)을 결정하고, 2003년 9월 제5차 칸쿤 각료회의까지 각국별 이행계획서(C/S; Country Schedule)를 제출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DDA 협상의 일괄타결방식(Single Undertaking)으로 협상을 완료하는 것이었으나 농산물 수출입국간의 대립으로 협상의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DDA 농업협상은 재개되어야한다는 회원국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있고 주요쟁점사항에 대한 각국의 이해관계조정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2008년 7월 이후에도 12월까지 지속적인 협상재개를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 제4차 수정안을 통해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였다

최근의 협상은 2008년 7월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주요국 각료회의였고, 농업과 비농산물 시장접근분야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잠정타협안이 도출 되었으나 농업에서 농산물 개도국 특별긴급관세 등 쟁점 이슈에 대한 인도-미국 등 일부 국가 간의 이견대립으로 협상 타결에는 실패하였다.

2) WTO/DDA 농업협정과 농산물 수출보조금의 연계

보조금이란, 각국 정부가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이나 기업에게 제공하는 각종 지원을 의미하며 보조금의 사용은 각국 정부의 고유권한에 속하나 보조금은 종류와 성격에 따라 특정산업이나 기업의 경쟁력구조를 변화시킨다. 또한 그 결과 상당한 정도의 수출촉진 또는 수입억제를 초래함으로써 다른 나라의 경쟁 산업이나 기업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규율의 대상이 되고 있다.

1994년 협정문 제1조에서는 보조금을 회원국의 영역 내에서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정지원이 행해지거나 소득 및 가격지원이 행해지는 경우로 정부지원은 직접적 자금 이전 이외에도 정부세입의 포기, 정부에 의한 일반 사회간접자본 이외의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재화의 구매 등 여러 가지 형태일 수 있으며, 이러한 지원으로 수령자에게 혜택이 발생되어야 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보조금을 무역에 미치는 효과와 특정성을 기준으로 금지보조금, 상계가능보조금 및 허용보조금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WTO/UR 농업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은 농업관련보조금을 국내보조와 수출보조로 구분하고 있으며, 국내보조는 일반적인 WTO 방식보다 조금 더 복잡한 박스 형태로 규정하여 신호등의 색깔에 맞추어 ‘박스(box)’에 따라 국내보조를 분류하고 있다. 레드(red)박스는 금지보조, 앰버(amber)박스는 감축대상보조, 그린(green)박스는 허용보조로 분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레드박스는 없고, 생산을 제한하는 제도와 연계한 블루(blue)박스가 허용되며, 앰버박스에서는 그 감축수준을 초과한 보조만이 금지되며, 개도국우대조치(S&D)¹⁾는 개도국을 위한 예외조치로서 인정된다.

수출보조부분에서 농업협정은 회원국의 양허목록에 특별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한 농산물에 대한 수출보조금을 금지하고 있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WTO 회원국들이 수출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금액과 보조금을 지급 받는 수출물량 모두에 대한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농업협정에서의 수출보조금은 수출실적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를 말한다. 농업협정상 수출보조는 ① 수출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의 현물을 포함한 직접보조, ② 비상업적 재고수출을 위해 국내 구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 및 처분, ③ 정부의 활동으로 조성된 재원을 통한 수출보조, ④ 수출농산물의 출하, 등급, 국제운송비 등 유통비용절감 지원, ⑤ 수출농산물의 국내운송비 지원, ⑥ 수출상품에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원료농산물에 대한 보조 등이며 모두 감축대상보조이다.(농업협정 제9조 1항)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경우 이행 기간 중에 감축대상 수출보조 중에서 ④ 수출농산물의 출하, 등급, 국제운송비 등 유통비용절감 지원과 ⑤ 수출농산물의 국내운송비 지원에 대해서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지원되지 않는 한 감축약속 이행의무에서 면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UR 협상에서는 개도국지위를 확보하여 시장개방의 폭이나 이행 기간에 있어서 혜택을 받아 왔다. 특히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수

1) 개도국우대조치는 개도국에 대한 특별하고 차별적인 대우(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가 협상의 중요 요소라는 것을 농업협정 서문에 규정하고 농업협정 제15조와 제16조에서는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와 최빈개도국 및 식량순수입 개도국에 대한 예외조치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있다.

출물류비 지원을 채소류를 비롯한 축산물까지 지급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DDA 농업협상에서는 수출물류비와 같은 지원체제에 대한 대폭적인 감축과 지원 규모 축소를 논의하고 있어 향후 직접적인 물류비 지원의 제약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농업협상결과에 따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보조금 감축분야의 폭이 결정됨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 유지가 필수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기존의 수출물류비 지원을 통한 농산물 수출지원체제에서 향후 농업협상결과에 따라 감축될 수 있는 직접적인 물류비 지원방안이 아닌 농산물 수출에서 물류비용절감과 물류효율화를 이룰 수 있는 물류의 구조적 개선방안을 연구개발하여 농산물 수출활성화를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2. 농산물 수출물류 지원 효과분석

1) 농업부문의 수출물류비 지원

물류(logistics)란, 상거래 활동에서 발생하는 생산자로부터 소비자까지의 재화 및 용역의 물리적 이전의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으며, 물류는 물적유통과 상적유통의 결합어이다. 본래 유통은 생산과 소비를 잇기 위한 기능이며 물적유통은 그 일부이다. 일반적으로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재화를 효과적으로 옮겨 주는 과정에는 포장, 보관, 집하, 적재, 하역, 수송 등의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된다. 어떠한 수송수단을 이용하든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재화의 이동은 불가능하며 이러한 이동의 전체를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물적유통이다.

물류의 목적은 적정한 상품을 적정한 장소와 시간에 보다 빠르고 안전하면서 저렴하게 보내주는 것으로 개별경제적 측면과 국민경제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개별경제적 측면에서 물류목적은 물류의 합리적 관리를 통해 물류코스트를 절감하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여 판매를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번영을 도모하는 데 있다. 그리고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물류목적은 생산과 소비의 흐름을 합리화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인 물류비를 절감하여 국가경제의 발전과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농산물 수출관련 물류지원은 구조적 개선보다는 물류비 지원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농업협상에서 논의되는 보조금 감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물류관련 비용지원방안을 벗어난 물류활동의 구조적 개선방안을 도입하여 농산물 수출물류의 구조적 합리화 및 효율화를 통해 농산물 수출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농업은 각국의 자연적, 지리적 여건에 따라 작황이 달라지는 산업으로서 농산물 수출은 타 산업의 수출과는 다른 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농산물 수출은 신선도 유지와 같은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운송 및 보관 활동에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고 있는 산업이다. 이에 농산물 수출물류비는 각 품목별로 차별화되어 선별포장비, 포장재료비, 국내운반비, 국제운송비, 수출통관비, 수입국내통관비, 수입국내

운송료가 포함된 개념이다.

선별포장비는 과실류, 화훼류, 채소류, 김치류에 해당되는 비목으로서 선별포장비용, 상차비 및 컨테이너 적재비 등을 말한다. 포장재료비는 과실류, 화훼류, 채소류, 김치류, 인삼류, 축산물류에 해당되는 비목으로 이들 제품을 수출하기 위한 비용 단위당 포장재료비를 말한다. 국내운송비는 국내에서의 내륙운송비로 수출 포장된 물품을 집하장(또는 창고)에서 부두까지 운송하는 비용(주요산지 또는 선별작업장 및 창고에서 수출항까지의 운송비를 포함)을 말하며 국제운송비는 해운회사나 항공회사의 운임이다. 수출통관비는 항만시설이용료, 컨테이너세, 서류발급비, 수출통관수수료, 터미널 화물취급수수료, 컨테이너 취급수수료, 부두비용, 선적비용, 은행수수료, 통지수수료 등을 말한다. 국외통관비는 화훼류 중 절화류 및 양란을 수입국에 판매의뢰하면서 발생하는 비목별 실적물류비용이고, 수입국내 운송료는 화훼류중 절화부문의 백합 해상운송시 수입국내 운송료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UR 농업협정 제9조 1항 (d), (e) 및 제9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농산물에 대하여 유통비용 및 운송비 보조금으로서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고 있다.

2) 수출물류비지원이 수출에 미친 효과분석

수출물류비지원이 농산물 수출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2008년까지의 연간자료를 대상으로 과실류, 화훼류, 채소류, 김치, 인삼, 축산물 등 6개 농산물수출품에 대한 수출물류비지원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수출물류비지원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출품에 대한 수요는 교역상대국의 소득(WGNP), 우리나라의 수출가격지수(AEXPR)와 교역상대국의 물가지수(WPRI)의 비율로써 나타난 상대가격지수, 수출물류비지원액(COST)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아 다음과 같은 수출수요함수식을 설정하였다.

$$AEXQ_i = \alpha_0 + \alpha_1 WGNP + \alpha_2 \frac{AEXPR}{WPRI} + \alpha_3 COST_i + \epsilon \quad \dots (1)$$

$$\alpha_1 > 0, \quad \alpha_2 < 0, \quad \alpha_3 > 0$$

여기에서 AEXQ :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출액, WGNP : 세계소득

AEXPR :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출물가지수, WPRI : 세계도매물가지수

COST : 수출물류비지원액, i : 과실류, 화훼류, 채소류, 김치, 인삼, 축산물

이 식에서 추정계수 $\alpha_1 \sim \alpha_3$ 는 우리나라 수출상품 수요에 관련된 변수의 탄력성의 크기를 나타낸다. 추정계수 α_1 은 소득의 변화에 대한 수출품의 수요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교역상대국의 소득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수요도 변화하게 되므로 교역상대국의 소득증가(감소)는 수출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감소)시키므로 세계소득(WGDP)이 증가할수록 우리나라의 수출은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정(+)의 값을 기대한다.

추정계수 α_2 는 우리나라의 수출물가지수와 세계물가지수 변화에 따른 수출량과의 변화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수출물가상승시 수출품에 대한 세계수요는 감소하고, 세계여타국들의 물가상승시 우리 수출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수출상대가격(AEXPR/WPRI)에 대한 계수는 부(-)의 부호를 기대한다.

추정계수 α_3 는 수출물류비지원액(COST)의 증가는 수출품의 단가를 하락시켜 수출을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에 정(+)의 값을 기대한다.

세계소득과 세계물가지수는 실질적으로 구하기 어려운 관계로 우리나라 농산물의 주요 수출상위 5개국(일본, 미국, 홍콩, 러시아, 중국)을 선정하여 수출에서 이들 국가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가중치로 두어 구한 소득(국내총생산)과 물가지수(소비자물가지수)를 세계소득과 세계물가지수의 대용변수로 사용하였다.

수출량(AEXQ)과 수출물류비지원액(COST)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사용하였고, 우리나라의 농산물수출물가지수와 세계 각국의 국내총생산(GDP) 및 소비자물가지수(WPI)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수출량과 수출물류비지원액과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하여 통상최소자승추정법(OLS)에 의한 분석을 시행하였고, 분석대상기간은 1998년부터 2008년까지의 연간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분석대상산업은 수출물류비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과실류, 화훼류, 채소류, 김치, 인삼, 축산물이다.

3) 수출물류비지원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

수출물류비 지원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하여 (식 1)을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으며, 우리나라의 농산물수출은 수출상대국의 소득과 상대가격지수 및 수출물류비지원액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분석한 결과이다.

<표 1> 수출물류비지원액이 수출에 미친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대상 \ 변수	세계소득	상대가격지수	물류비 지원액	R2	Adjusted R2	D-W
과실류	0.0041*	-16.1972	1.6343*	0.87	0.83	2.3959
	(1.9794)	(-0.2204)	(2.5558)			
화훼류	0.0024**	-66.8826	-3.0300	0.59	0.46	1.5369
	(2.7857)	(-1.4814)	(-0.0082)			
채소류	0.0018	8.2150	0.0041	0.49	0.32	1.3076
	(1,2600)	(0.1184)	(0.9513)			

김 치	-0.0028	94.2008	0.0507**	0.68	0.57	2.0151
	(-2.5386)	(3.0091)	(3.1091)			
인 삼	0.0028**	28.6909	-0.0746	0.89	0.84	0.9762
	(3.4796)	(1.0362)	(-3.2241)			
축산물	0.0038	-195.209	0.4815**	0.72	0.62	1.9943
	(0.6296)	(-0.6744)	(3.5770)			
전 체	0.0206	20.9168	-0.0171	0.65	0.54	1.9965
	(2.0934)	(0.0570)	(-2.0482)			

주 : * $p < 0.1$, ** $p < 0.05$

농산물 수입국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농산물 수출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하에 분석한 결과 과실류, 화훼류, 채소류, 인삼, 축산물은 상대국의 소득에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화훼류와 인삼은 5% 유의수준에서, 과실류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임을 보여주었다.

농산물 수입국의 소비자물가지수와 농산물 수출물가지수로 구한 상대가격지수가 높을수록 농산물에 대한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하에 분석한 결과는 과실류, 화훼류, 축산물 등의 수출이 수출상대국의 물가에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유의수준이 낮음을 보여주었다.

수출물류비지원액이 증가할수록 농산물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하에 분석한 결과는 과실류, 채소류, 김치, 축산물 등의 품목에서 유의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김치와 축산물은 5% 유의수준에서 과실류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농산물 수출액과 전체 수출물류비 지원액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도 자료수집상의 제약으로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았으나, 농산물 부문에 대한 수출물류비 지원은 수출의 증가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분석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과실류, 김치, 축산물 부문의 분석결과는 농산물 부문에 대한 수출물류비 지원이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고 채소류는 유의수준의 범위 내에는 들지 못하였지만 수출물류비의 지원효과가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효과 분석을 통해 지속적인 물류비 지원이 가능할 때 수출활성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업협상결과 농업보조금 감축이 시행되면 지속적인 수출물류비 지원은 상대적으로 어렵게 되며 이는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직접적인 물류 지원비 제공에서 정책적인 전환으로 물류아웃소싱과 같은 물류의 구조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농산물 수출지원과 물류아웃소싱의 상호연계

1. 농산물 물류아웃소싱의 구조

1) 물류아웃소싱의 이해

물류아웃소싱(Logistics Outsourcing)이란, 기업이 경영활동 중에서 물류부문을 외부물류전문업체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하며 물류아웃소싱은 제3자 물류(Third-Party Logistics), 물류 제휴(Logistics Alliance), 계약물류(contracter Logistics) 등으로 불리 운다. 물류아웃소싱은 물류기업과 화주기업간의 관계에서 화주기업은 역량을 생산과 제조 등의 핵심부분에 집중하고 그 이외에 기업활동 중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물류부문중 수송·보관·하역 등의 비핵심적인 기능은 외부의 전문적인 물류서비스 업체로부터 공급 받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물류활동 구조는 조직내외에 경영조직화하는 과정에 의해서 자사물류, 제2자 물류, 제3자 물류로 구분되고 있다. 자사물류는 기업이 물류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조직을 기업 내부에 조직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자사물류는 기업의 물류활동을 내부화함으로써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조직의 비대화를 비롯한 업무의 전문성 결여에 대한 문제점도 있다.

제2자 물류는 기업이 자회사로서 기업의 물류활동을 관리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회사는 본사의 분사형태로서 형성된 기업이다. 제2자 물류는 물류활동에 대한 기능을 본사의 내부가 아닌 외부로 일정 정도 이전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자사물류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제3자 물류는 물류아웃소싱의 기능으로서 기업의 물류활동에 대한 부분을 전문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한 기업으로 이전함으로써 기업은 핵심적인 역할 수행만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전문적인 물류활동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에게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물류활동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다.²⁾

대한상공회의소는 물류활동의 아웃소싱을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³⁾ 1단계는 운송·보관·하역·포장·정보처리·유통가공 등 일련의 공급체인(Supply Chain Management; SCM)에서 요구되는 물류의 각 기능을 부문별로 외부의 물류업체에게 아웃소싱하는 경우를 말한다. 2단계는 운송·보관·하역 등 여러 물류기능을 일괄적으로 하나의 물류업체에게 아웃소싱하는 경우이고, 3단계는 서비스 범위 측면에서 2단계와 유사하지만 운영·관리 측면뿐만 아니라 물류전략 계획의 수립부문까지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이다.

2) 농산물 수출 물류아웃소싱의 동기

기업이 수행하는 여러 활동 중에서 물류기능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해주는 성격을 지닌 것이다.

2) 김기현·이종학, “우리나라 기업의 물류아웃소싱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 논집』, 2000, pp.140~141.

3) 대한상공회의소, 『제3자 물류업체의 경영실태조사』, 1999, p.4.

기업이 단순히 생산과 제조 활동을 중시 여기던 시대를 넘어 점차 상거래의 활성화와 거래구조의 다양성 그리고 경제환경의 글로벌화는 물류활동의 중요성과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환경변화 속에서 농산물 수출에서 물류활동은 농산물이 지닌 고유한 특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물류활동에 있어 비용과 시간, 운영면에서 비효율적인 면이 있어 아웃소싱을 통해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농산물수출은 농산물 생산업자와 수출기업간 거래계약에 따라 자사물류형태로 운영되어 지나친 고정비의 투자로 투자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고 농산물 취급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상품가치 하락을 초래하여 가격경쟁력을 상실하는 한계점을 보여주었다. 또한 보관 및 포장에 대한 전문성 부족은 거리적 제한요소를 해결하지 못하고 근거리 지역 및 국가로 수출하는 형태로 제한되었다. 따라서 물류관리 활동에 있어서 농산물 생산 및 수출기업이외에 수출물류활동 전문성이 충족될 수 있는 새로운 물류업체로 아웃소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물류아웃소싱에 관한 선행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antiz⁴⁾은 기업이 물류부문에 많은 투자를 하여도 투자의 효율성을 찾기 어렵다고 전제한 뒤 제3자 물류서비스 제공업자들이 제공하는 물류기능의 일부 혹은 전부를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하였다. 기업이 물류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기업조직을 이용하는 경우와 외부조직을 이용하는 경우를 비교분석하였을 때 외부조직인 전문물류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Baghi & Virum⁵⁾은 기업이 물류아웃소싱을 하는 동기는 시장규모 축소, 국내이외의 장소에서의 글로벌 경쟁의 증가, 제품수명주기의 단축, 과대비용, 신속하고 유연한 고객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증대, 이윤의 감소 등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물류 아웃소싱의 동기는 비용절감과 고객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기업의 경영전략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Londe & Maltz⁶⁾은 물류아웃소싱을 하는 이유는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한 목적보다는 서비스의 차별화를 위해 시도한 것으로 고객서비스의 차별화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지적하였다.

기업이 물류활동을 아웃소싱함으로써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기업이 지닌 핵심역할을 집중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고,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농산물 수출은 특히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와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변화에 대해 물류활동의 아웃소싱을 통한 전문성 강화를 통해 고객 서비스의 개선이 이루어짐으로써 농산물 수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4) Cantiz, H.C., "How to Find, Evaluate, Choose and Manage A Third Party Logistics Provider" Annual Conference Proceeding, Council of Logistics Management, 1996, pp.4-8.

5) Baghi, P.K. and Virum, H., "Logistics alliances : Trend and Prospects in integrated Europe", Journal of Business Logistics, Vol. 19, No. 1, 1998, pp.199-205.

6) La Londe, B.J. and Maltz, A.B., "Some Proposition about Outsourcing : The Logistics functio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Logistics Management, No. 3, 1991, pp.1-11.

이외에도 농산물 수출물류아웃소싱을 통해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수출비용의 절감과 고객서비스의 차별화 및 고객만족의 극대화를 통해서 수출이익 극대화를 이루게 되며 이는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의 경쟁력 강화로 연계될 수 있다. 기존의 물류비 지원방식을 통한 농산물 수출물류 개선보다 물류아웃소싱을 통한 물류활동의 구조적 개선을 통한 농산물 수출활성화 방안은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농산물 수출품목의 품질향상과 시장 확대를 통한 경제성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2. 농산물수출 물류 아웃소싱 방안 : 제3자 물류 활용

1) 제3자 물류의 개념 및 특성

제3자 물류(Third-Party Logistics)는 기업이 고객서비스의 향상과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 물류활동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물류전문업체에게 공급체인인 전부 혹은 일부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물류의 기본적인 기능인 운송·포장·하역 등 일련의 공급체인에서 요구되어지는 활동을 외부의 물류전문업체에게 위탁함으로써 기업이 스스로 운영하던 자사물류와 자회사 물류에서 벗어나 물류구조에 새로운 변화를 도모한 것이다.

제3자 물류는 물류채널내의 다른 주체와 일시적이거나 장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대행자 혹은 매개자를 의미하며, 제3자 물류란 하주와 단일 혹은 복수의 제3자간에 일정기간 동안 일정비용으로 일정 서비스를 상호합의하에 수행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제3자 물류를 하주에 대하여 물류개혁을 제안하고 포괄적으로 물류업무를 수탁하는 업무라고 정의하면서 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적 환경을 바탕으로 다양화, 고도화하고 있는 물류수요에 대응한 업체, 서비스로서 제3자 물류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⁷⁾.

또한 제3자 물류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 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고객의 물류업무 전체를 위탁 받아서 전체를 최적화하는 것이다. 물류업무 전체 중 어느 한 부분에서 물류효율화를 도모하여도 나머지 부분에서 업무가 증대하면 전사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한 개 부분에 의한 비용절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효율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 둘째는 고객과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것으로, 고객의 물류효율화와 비용절감을 도모하는 것은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며 이는 물류업체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제3자 물류 사업자와 고객은 물류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이익을 함께 배분하는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종래의 물류업은 고객과의 관계가 수직적이었으나 제3자 물류업은 물류업무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노하우를 이용하여 기업에게 물류활동의 외주를 책임지는 기업으로서 수평적인 구조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물류업체와 외주를 위탁하는 기업 간의 관계는 물류업무 부분에 있어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만 기업의 물류외주화에 대한 효과를 증진할 수 있게 된다.

7) 寺前秀一, “經濟構造改革と物流”, 日通綜合研究所, 1997, p.63.

제3자 물류는 공동창고 보관관리가 가장 오래된 형태이며, 그 외에도 마케팅 분야, 수배송, 수출입 관리 분야 등이 제3자 물류에 포함되어지고 있다. 산업이 고도화되고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서 제3자 물류 서비스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의 유형에는 조립, 품질 통제, 고객 서비스와 같은 부가가치 활동이 해당된다.

2) 농산물 수출물류와 제3자 물류 연계

WTO 출범이후 국제적으로 농산물 교역은 자유화 되고 외국의 저렴한 농산물이 국내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농업시장 개방을 통한 외국농산물 시장개방은 수입규제조치의 상대적 완화결과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시장 개척과 같은 기회요인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농산물은 수출구조상 다른 수출재화와는 다른 특성을 지닌 것으로 생산이외에 운송, 보관, 포장 등 부대활동에 대한 비용이 높은 분야이다. 특히 최근 다품종 소량생산과 친환경 농산물 수요증대는 신선도유지를 비롯하여 운송과 보관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로 발전하고 있다. 기존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은 농산물 물류활동의 전문성부족으로 인해 제한된 상품에 한하여 제한된 지역으로만 수출을 수행하여 수출활성화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UR 농업협상 이후 수출물류비 지원을 통한 농산물 수출활성화를 추구하였지만 DDA 농업협상의 전개과정에서 수출물류비의 감축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물류활동 구조의 새로운 활성화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아웃소싱 형태의 농산물 수출물류활동 전개의 필요성이 또한 증가하고 있다.

물류아웃소싱의 대표적인 형태인 제3자 물류방식을 농산물 수출에 연계함으로써 생산자와 수출자 이외에 농산물 수출전문 물류업체의 활동영역을 추가함으로써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를 비롯하여 보관, 포장의 전문성을 강조함으로써 새로운 농산물 수출시장의 개척과 신제품개발을 주도함으로써 농산물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농산물은 산지집하부터 제품선별과정을 통한 포장 그리고 보관 및 운송 등 각 단계별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로서 제3자 물류방식을 연계함으로써 농산물의 고유특성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으며 고객만족 극대화를 통한 수요창출을 통해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경쟁력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에는 상대국의 농산물 안전성강화가 강조되고 있어 수출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전문물류업체를 활용하게 되면 수입국의 검역강화조치와 같은 수입제한 장벽을 회피할 수 있어 정책적 활용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활성화 추진을 위한 농산물 물류아웃소싱의 제3자 물류 활용은 우리나라 농산물 제품에 관한 소비자 인식제고를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로 연계되어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IV. 농산물 수출물류활동 활성화 방안 및 과제

1. 농산물 수출물류 구조개선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UR 농업협상 이후 농산물 수출시장의 적극적 개척과 활성화를 위해 협정문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수출물류비는 농수산물 수출증대를 위하여 상대적으로 물류비 부담이 큰 과실류, 화훼류, 채소류, 김치류, 인삼류 및 축산물에 대하여 물류비의 일부(30% 내외)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UR 협정시 수출보조지원 실적이 없는 것으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90년 이후부터 대만과 구상무역을 위한 과실류 물류비를 처음 지원한 이후 지원부류 및 지원액을 점차 확대해 왔었다.

WTO 출범이후 1996년부터는 UR 농업협정 제9조 1항 (d), (e) 및 동조 4항의 규정⁸⁾에 의하여 개도국의 수출농산물에 대한 유통비용 및 운송비 보조금 감축의무 면제 조항에 따라 농산물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WTO에 수출물류비지원 실적을 매년 통보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도 시작된 WTO/DDA 다자간 협상결과 2004년 농업분야 기본골격(frame work) 합의 내용 중 수출경쟁분야에 의하면 일정시점까지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를 철폐하기로 하고 개도국에 허용된 수출보조(UR 농업협정 제9호 4항)는 유지하되 “선진국의 수출보조가 철폐되는 시점”을 지나서 “합리적 기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완전 철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금번 WTO/DDA 협상이 합의되면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유지 여부에 따라 현행 농산물 수출물류비 보조는 어느 시점까지는 지원확대가 가능하나 그 이후부터는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완전 철폐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향후 DDA 농업협상 최종합의에 따라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경우에는 WTO 규정중 허용보조(green box와 제9조 4항에 의한 수출보조)의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나 수출물류비 보조는 선진국 수출보조 철폐시점 이후 합리적 기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철폐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게 될 경우에는 WTO 규정중 허용보조(green box와 제9조 4항에 의한 수출보조)중 수출물류비 보조는 WTO/DDA 협정 최종 이행연도부터 향후 협상에 의한 합의년도(end point)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완전 철폐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최근 농산물수출을 2012년까지 100억 달러 달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출시장개척과 농산물 수출품목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

8) UR 협정 제9조 수출보조에 관한 약속

1. 다음의 수출보조는 본 협정하의 감축약속 대상으로 한다
 - (d) 출하, 등급 및 기타 부대비용, 국제운송비용 등을 포함한 수출농산물에 대한 유통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한 보조금의 지급
 - (e) 수출물량에 대한 국내운송비를 국내수송물량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정부가 제공하거나 제공토록 하는 경우
4. 이행기간 동안 개도국에 대해서는 위의 1항 (d), (e)에 해당하는 수출보조가 감축약속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지원되지 않는 한 감축약속 이행의무를 면제 한다

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이는 농산물 수출물류의 단순 비용지원체제를 벗어난 물류활동의 구조적 개선을 통한 전문성확보와 비용절감을 통한 농산물 수출활성화방안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농산물 수출을 위한 물류활동은 농산물의 품목별 특성을 비롯하여 계절적, 지리적 여건을 고려한 물류활동이 연계되어야 하는 것으로 기타 다른 재화와는 차별적인 물류활동이 전개되어야 하는 분야이다. 또한 산지집하에서 운송과 보관을 비롯하여 소비자의 기호충족을 위한 사전적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여 수출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물류전문성이 강조되고 있다. 즉 물류활동의 아웃소싱을 통한 전문물류업체 활용은 농산물 수출활성화의 주요요인이며 경쟁력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인이 강조되고 있다.

2. 활성화 방안 및 향후과제

현재 논의되고 있는 DDA 농업협상 타결이후 개도국 지위 유지시 선진국 철폐년도까지는 수출물류비의 지원이 가능하므로 수출확대를 위하여 수출물류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한편으로는 수출물류비 지원은 언젠가는 철폐되어야 하므로 수출농산물 생산농가나 농산물 수출업체의 자생력 향상을 위하여 지원규모를 언젠가의 철폐를 고려하여 지금부터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다.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기반은 그 동안 정부지원과 농업경영인, 수출업체 등의 노력으로 수출이 확대되어 왔으나 아직도 부류별·품목별로 수출농산물의 생산기반, 품질경쟁력, 가격경쟁력, 안정성확보, 물류기법 및 체계, 수출농산물 해외 마케팅 등 분야별로는 선진국에 비하면 미흡한 형편이다. 또한 WTO 체제와 FTA 협상 진행으로 인한 농산물 세계화는 수출경쟁국과의 수출경쟁과 수출방어를 위한 경쟁은 더욱 가속화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수출물류비 지원이 가능한 시점까지 최대한 수출물류비를 확대지원하므로써 그 동안에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기반을 튼튼히 하여 수출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수출물류비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특히 물류비 지원 자체에 부정적 시각에 대한 설득노력이 어느 때 보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물류비 지원체제를 유지하기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장기적인 차원에서 물류활동의 전문화를 위한 아웃소싱기법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물류기반사업의 일환으로 효율적인 물류비절감을 위한 유통-수출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통합 수·배송 관리와 물류정보화 도입 및 활용방안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물류정보화를 통한 e-logistics의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정보통신체계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물류정보화를 실현함으로써 기존 물류창고와 운송업체를 연계할 수 있는 조직을 구축하여 물류관리의 실시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공차율을 조정함으로써 농산물 수·배송에 대한 비용감소 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농산물 농가와 농산물 물류관리소간의 정보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물류정보화를 통한 물류관리를 구축하고 공급관리사슬(SCM)을 통한 물류기능을 통합화하는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개별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수·배송 업무를 관리하는 것 보단 제3자 물류를 통한 수·배송을 통하여 농산물 분야의 물류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농산물수출물류에서 제3자 물류(3PL: Third-Party Logistics)란, 농산물 생산자와 수출업체 그리고 운송업체와의 일시적이거나 장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물류채널내의 대행자 또는 매개자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제3자 물류는 화주와 단일 혹은 복수의 3PL 간에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비용으로 일정서비스를 상호 합의하에 수행하는 과정을 3PL 또는 계약물류(Contract Logistics) 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제3자 물류방식을 도입한 농산물 수출은 물류기능을 아웃소싱한다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지닌 농산물 전문물류업체의 도입으로 인해 농산물 생산 및 수출업체는 물류업무를 외부의 전문 업체에게 아웃소싱하고 농산물 품질향상 및 신제품 개발에 주력하여 내부적인 역량을 핵심부문에 집결할 수 있는 것이다.

농산물 물류아웃소싱을 통한 제3자 물류를 활용함으로써 우리 농산물의 해외수요기반 조성과 수출증대를 위한 판촉활동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향후 새로운 농산물 수출시장개척 확대를 위해 공동브랜드 및 개별브랜드 상품별 판매촉진 활동비를 지원하고, 품목별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 및 수출업체, 수출조합의 해외시장개척프로그램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농업분야는 UR 협상 이전에는 국제무역협상에서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UR 협상부터 최초로 다자무역협상에 포함되었다. UR 협상에서 농산물 무역자유화를 위한 재협상에 합의(BIA)하여 2000년 초부터 WTO에서 농업에 대한 후속협상이 재개되면서 2001년도 11월 도하각료회의에서 DDA 협상의 출범으로 농업협상이 본격화 되었다. WTO/DDA 농업협상에서는 관세와 같은 보호장벽과 농업분야에 대한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 그리고 수출보조의 단계적 철폐를 위한 방안이 주로 논의되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조금이란, 각국 정부가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이나 기업에게 제공하는 각종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보조금의 사용은 각국 정부의 고유권한에 속하나 보조금은 종류와 성격에 따라 특정산업이나 기업의 경쟁력구조를 변화시키고, 그 결과 상당한 정도의 수출촉진 또는 수입억제를 초래함으로써 다른 나라의 경쟁산업이나 기업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규율의 대상이 되고 있다. WTO/DDA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개도국지위를 유지하게 되면 WTO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출보조의 지속적인 지원이 일정기간까지 가능하나 개도국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수출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수출물류비는 향후 협상에서 결정되는 특정연도 완전폐지를 목표로 감축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WTO/UR 농업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에서는 수출실적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수출보조금은 회원국의 양허목록에 특별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한 금지하고 있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WTO 회원국들이 수출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금액과 보조금을 지급 받는 수출물량 모두에 대한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이행기간 중에 감축대상 수출보조금에서 수출유통비용이나 수출품에 대한 운송비 지원에 대하여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지원되지 않는 한 감축 약속 이행의무에서 면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UR 협상에서 개도국지위를 확보하여 시장개방의 폭이나 이행기간에 있어서 혜택을 받아 농수산물의 수출시에 물류비와 유통비용에 많은 지원을 해 주었으나 WTO/DDA 농업협상의 결과 우리의 개도국지위 지속여부가 불투명한 상황하에서 이러한 지원은 계속되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수출물류비지원이 농산물 수출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분석해 본 결과 수출물류비지원이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도출되어 농산물 분야에 대한 수출물류비 지원이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을 증가시킨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출물류비지원이 지속적으로 어려운 상황 하에서 농산물 분야에 대한 수출활성화 방안이 요구되어 진다.

그리고 2012년까지 농산물 수출 100억 달러의 목표 달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산물 수출시장의 개척과 수출품목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농산물 수출물류의 단순 비용지원체제를 벗어난 물류활동의 구조적 개선을 통한 전문성 확보와 비용절감을 통한 농산물 수출활성화 방안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농산물 수출에 있어서 물류활동은 농산물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재화와는 달리 신선도의 유지와 신속한 수·배송이 필요하고 포장, 보관, 집하, 수송 등에 있어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물류활동에 있어 비용과 시간, 운영 면에서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류아웃소싱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까지의 농산물 수출은 농산물 생산업자와 수출기업간의 계약에 따라서 자사 물류 형태로 운영되었다. 그로 인해 지나친 고정비의 발생으로 인해 투자 효율성이 떨어지고 농산물 취급에 대한 전문성 결여로 인해 상품가치의 하락을 초래하여 가격경쟁력을 상실하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물류관리 활동에 있어서 농산물 생산 및 수출 기업 이외에 전문적으로 수출물류 활동을 지원 해 줄 수 있는 시스템과 물류아웃소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문적인 수출물류 활동을 위해 효율적인 물류비 절감을 위한 유통·수출 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통합 수·배송 관리와 물류정보화 도입 및 활용방안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물류정보화를 통한 e-logistics의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정보통신체계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물류정보화를 실현함으로써 기존 물류창고와 운송업체를 연계할 수 있는 조직을 구축하여 물류관리의 실시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공차율을 조정함으로써 농산물 수·배송에 대한 비용감소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농산물 농가와 농산물 물류관리소간의 정보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물류정보화를 통한 물류관리를 구축하고 공급관리사슬(SCM)을 통한 물류기능을 통합화하는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개별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수·배송 업무를 관리하는 것 보단 제3자 물류를 통한 수·배송을 통하여 농산물 분야의 물류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물류활동의 아웃소싱을 통한 전문 물류업체의 활용은 농산물 수출 활성화의 주요 요인이 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요 요인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DDA 농업협상 타결 이후 수출물류비 지원은 언젠가는 철폐되어야 할 것이므로 수출물류비 지원이 가능한 시점까지는 최대한 수출물류비의 확대 지원이 필요하며 지원 방법으로는 개별 농가나 무역업체에 대한 지원 방식보다는 농산물 수출물류를 위한 인프라를 개발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원방법으로는 물류비 절감을 위한 유통-수출 시스템을 구축하여 통합 수배송 관리와 물류 정보화를 위한 정보통신체계의 구축이 필요하고 물류정보화를 실현함으로써 농산물 생산농가와 유통업체, 수출업체를 연결한 통합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3자 물류와 같은 물류 아웃소싱을 활용함으로써 농산물 수출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기수, 『WTO 정부 보조금 및 상계관세』, 세종연구소, 1996.12.
- 김기현·이종학, “우리나라 기업의 물류아웃소싱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 논집」, 2000.
- 농림부 국제농업국, 「주재국의 DDA농업협상 및 농정개혁 동향과 전망」, 2003.2.
- 농림부 국제농업국, 『농림축산물 수출입동향』, 각년호.
- 농림부 농업협상과, 『농업관련 WTO 통보실적』, 2003.12.
-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각년호.
- 농산부 수출진흥처, 「수출물류비 원가산정을 위한 연구」, 농수산물유통공사, 2002.12.
-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농산물 물류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1999.9.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업선진국의 수출진흥시책』, 2000.
- 농수산물유통공사, 『해외 농산물 선진 수출입 시스템』, 2002.12.
- 대한상공회의소, 『제3자 물류업체의 경영실태조사』, 1999.
- 박현희, “물류환경변화와 동북아 물류거점화의 전략과 과제”, 『관세학회지』 제5권 제3호, 한국관세학회, 2004.
- 박현희, 「수출지원보조에 관한 실증적 연구 - WTO 보조금·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을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6.
- 성소미·손상호·송종국, 『산업지원정책』, 한국개발연구원, 1995.11.
- 손상호·윤재형, 『UR 보조금·상계조치협정 해설서』, 산업연구원, 1994.

- 이재욱·서진교·이병훈, 『WTO/DDA 농업협상 시장접근분야 세부협상원칙 수립에 관한 논의 동향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12.
- 임송수, 『WTO 농업협상에서 국내보조에 대한 논의 동향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12.
- 임송수·김상현, 『WTO 개도국 지위의 논리와 협상 대응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9.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문 해설」, 1994.1.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DDA 농업협상 기본골격 합의안의 평가와 시사점』, DDA 농업협상 세미나 자료, 2004.8.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각호.
- 농림부, www.mofat.go.kr
- 관세청, www.customs.go.kr
-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 통계청, www.nso.go.kr
- 한국수출보험공사, www.keic.or.kr
- 한국은행, www.bok.or.kr
- Cantiz, H.C., "How to Find, Evaluate, Choose and Manage A Third Party Logistics Provider.", Annual Conference Proceeding, Council of Logistics Management, 1996.
- Baghi, P.K. and Virum, H., "Logistics alliances : Trend and Prospects in intergrated Europe", Journal of Business Logistics, Vol. 19, No. 1, 1998.
- Huzagh, Sandra M. and Mark R. Greene, "FCIA: Help of Hindrance to Exports",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49, No.2, 1982.
- La Londe, B.J. and Maltz, A.B., "Some Proposition about Outsourcing : The Logistics functio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Logistics Management, No. 3, 1991.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 WTO, G/AG/N/JPN/97 외, Export Subsidies: Japan
- WTO, G/AG/N/KOR/32 외, Export Subsidies: Republic of Korea
- WTO, G/AG/N/USA/53 외, Export Subsidies: United States of America
- WTO, WT/GC/W/535/Corr.1, Doha Work Programme Draft General Council Decision of 31 July 2004
- 寺前秀一, “經濟構造改革と物流”, 日通綜合研究所, 1997.